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8. 10. 2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시정조치), 제16조(시정조치), 제21조(시정조치), 제24조(시정조치), 제27조(시정조치), 제31조(시정조치),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제1항·제3항, 별표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시정조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5조(시정조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시정조치)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과징금 부과에 있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운영사업자에 대한 유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한다.

2008년 10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안)

I. 목 적

이 고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라 한다)의 도입요건, 평가기준 및 다음 각호의 경우에서 CP의 모범적 설계운용 등에 의하여 부여되는 유인을 명확히 규정하여 C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제1항·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시정조치), 제16조(시정조치), 제21조(시정조치), 제24조(시정조치), 제27조(시정조치), 제31조(시정조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시정조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시정조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정조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II. 정 의

1.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2. “CP”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3. “CP 등급평가”란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 운영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III. CP의 도입요건

기업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요건 4.를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다.

1.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정거래 선포식 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자율준수편람을 최소한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4.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온라인 동영상 교육 포함)을 구매·판매부서 등 그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내부감독체계 구축

자율준수관리자가 감독·감사 실적 및 계획을 반기당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또는 승인)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6.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7. 문서관리체계 구축

자율준수에 관한 문서들은 체계적으로 작성·보관되어야 한다.

IV. CP 등급평가

1. 평가대상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된 기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년 미만인 기업이라도 상당기간 운영실적이 있어 평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평가기관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공고하는 기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주하는 'CP 등급평가' 용역의 사업자로 선정되는 기관에서 담당한다.

3. 평가기준

CP 등급은 CP 제도의 도입, 최고경영자의 실천의지,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 CP 교육체계 구축, 자율준수 편람, 인사제재시스템 구축, 자율준수풍토 조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감시, 문서관리 구축, CP의 기업 경영 체화(Built-in CP), 자율준수 점검체계(Compliance Check System), 내부고발시스템 구축, CP 평가 및 감사 등에 대하여 항목별 중요도, 기업의 준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4. 평가절차 : CP 등급평가는 매년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실시한다.

평가단계	세부내용
1단계 (서류평가)	•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기업의 CP 운영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평가
2단계 (심층면접평가)	•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1단계 서류평가를 기초로 자율준수관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에 대한 진위여부를 평가
3단계 (현장방문평가)	• 1·2단계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서류 및 심층면접 결과와 실제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1~3단계중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평가	• 최근 2년 간(CP 도입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정도를 평가하여 등급평가에 반영
평가점수 및 등급결과 분석	• 각 단계별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등급으로 환산하여 기업별, 항목별 결과 분석

5. 평가등급

평가등급은 “AAA(최우수)” 등급에서 “D(매우 취약)” 등급까지 8등급(AAA, AA, A, BBB, BB, B, C, D)으로 구분한다. 다만, 등급 산정시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 평가기준을 기초로 산정한 등급에서 최대 2단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등급	특징
AAA(최우수) “90이상~100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 등이 균형있게 체계를 갖추고, 모든 부문에서 최우수의 운용성과를 시현 • 특히, 당해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취약분야에 대한 초기감사를 시행하였고, 기업 내 임직원의 자율준수 풍토가 상당한 수준으로 조성
AA(우수) “80이상~90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가 균형있게 체계를 갖추고, 각 부문에서 우수 이상의 높은 성과를 시현
A(비교적 우수) “70이상~80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가 균형있게 체계를 갖추고, 각 부문에서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시현
BBB(양호) “60이상~70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가 비교적 균형있게 체계를 갖추고, 운용성과면에서도 양호
BB(비교적 양호) “50이상~60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가 비교적 균형있게 체계를 갖추고, 운용성과면에서도 비교적 양호
B(보통) “40이상~50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가 비교적 균형있게 체계를 갖추고, 운용성과면에서는 보통
C(취약) “30이상~40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가 균형있게 갖추어지지 못하였으며, 운용성과면에서도 미흡
D(매우취약) “0이상~30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의 도입과 운영이 자극히 형식적

6. 유효 기간

CP 등급평가 결과는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간 유효하다.

7. 법 위반시 등급조정

CP 등급평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시정명령이상의 제재(시정명령, 고발, 과징금부과를 말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 1회당 기준에 인정받은 평가등급을 2단계 하향조정한다.

V. 유인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유인을 제공한다.

1. 사후적 유인

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부과 고시”라 한다)상의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업자가 CP등급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비율과 같이 과징금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 (1) A : 100분의 10 이내
- (2) AA : 100분의 15 이내
- (3) AAA : 100분의 20 이내

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공표 지침”라 한다)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업자가 CP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공표지침」 5.의 나.(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 및 매체수를 1단계 하향 조정할 수 있고, 5.의 다.(3)(가) 및 라.(2)(나)에 의한 사업장공표 또는 전자매체공표에 대한 공표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수 있다.

다. 적용제외 사유

위 가. 또는 나.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CP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 (3) 다른 규정에 감경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예 : 부당한 공동행위의 신고 또는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 등)
- (4)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2. 사전적 유인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업자가 CP 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간동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소매점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및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하 “직권조사관련 법규”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면제한다.

- (1) A : 1년
- (2) AA : 1년 6개월
- (3) AAA : 2년

나. 적용제외 사유

위 가.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2), (3)은 해당 법규에 대한 직권조사에 한한다.

- (1)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실이 있거나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 (2) 직권조사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 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 (3) 명백한 직권조사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과징금부과 고시」 IV.3.다.(9)(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의한 감경)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고시 IV.3.다.(5)(가)의 단서 규정 및 [별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준은 이를 삭제한다.
 - 가.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IV.에 의한 CP 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비율과 같이 과징금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 (1) A : 100분의 10 이내
 - (2) AA : 100분의 15 이내
 - (3) AAA : 100분의 20 이내
 - 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V.1.다. 및 V.2.나.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공표 지침」6.(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따른 감경)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IV.에 의한 CP 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위 5.의 나.(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 및 매체수를 1단계 하향 조정할 수 있고, 5.의 다.(3)(가) 및 라.(2)(나)에 의한 사업장공표 또는 전자매체공표에 대한 공표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수 있다.
 - 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V.1.다. 및 V.2.나.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 지침”이라 한다) 제3조(고발의 면제)는 이를 삭제한다.
5. 「대규모소매점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6.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종료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인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과징금부과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 고발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0호), 공표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호), 「대규모소매점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기준」에 의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9.23 대통령령 제2103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2005.6.30>

제1조의2 (중소기업자의 범위등) 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하도급계약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7.3.31, 1999.3.31, 2005.6.30>

② 법 제2조(정의)제2항 제2호 본문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신설 1997.3.31>

③ 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본문에서 “상시고용종업원수”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실적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체결일 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를 말한다. <신설 1997.3.31>

④ 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6.30>

1.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2. 건설위탁의 경우 :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3. 용역위탁의 경우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⑤ 법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레미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등의 지역”이라 함은 수급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광주광역시·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및 제주도를 말한다. <신설 1997.3.31, 1999.3.31, 2005.6.30>

⑥ 법 제2조제9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7.3.31, 1999.3.31, 1999.6.30, 2005.6.30>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⑦ 법 제2조제9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1997.3.31, 1999.3.31, 2000.8.17, 2003.11.29, 2004.3.29, 2004.4.19, 2005.6.30, 2007.9.10, 2007.9.27, 2008.8.26>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등록업자
3. 삭제 <2000.8.17>
4. 삭제 <2000.8.17>
5. 삭제 <2004.4.19>
6.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8.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전문개정 1995.4.1]

제2조 (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 〈개정 1995.4.1, 1997.3.31, 2005.6.30, 2008.9.23〉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제3조 (서류의 보존) ①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의 서류 또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 〈개정 1993.2.20, 1997.3.31, 1999.3.31, 2005.6.30, 2008.9.23〉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증명서
 2. 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
 3.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4.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6. 법 제1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7. 원재료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제6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7.3.31〉

제3조의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①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이라 함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로 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를 제외한다.

-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05.6.30]

[중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로 이동 <2005.6.30>]

제3조의3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9.3.31, 2001.9.29, 2004.4.19, 2005.6.30>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법 제13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이라 함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및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1997.3.31]

[제3조의2에서 이동 <2005.6.30>]

제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함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4.19]

[별표 1] <신설 2005.6.30>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 및 하도급거래분야(제7조 제1항 관련)

사업자단체	하도급거래분야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제조·수리 및 용역의 위탁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공동설치)	법 제2조제9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건설·제조업의 위탁
3. 「전기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공사 협회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의 위탁
4.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의 위탁
5. 「소방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건설위탁 중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위탁
6.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엔지니어링 활동의 위탁
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의 위탁
8.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설계의 위탁
9.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경쟁 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제조·건설·수리 및 용역의 위탁
1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광고단체의 연합회	광고제작의 위탁
11. 한국방송협회 및 「민법」 제32조의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단체(공동설치)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위탁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의규정에 따라 설립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동설치)	화물운송과 관련된 위탁
1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운송·하역 등을 하는 자들의 물류단체	물류분야의 위탁(항만물류 및 화물운송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다)

[별표 2] <개정 2008.9.23>

과징금부과기준(제14조의2 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과징금의 금액은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 유형의 수 및 과거의 위반전력 등 4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이를 상한금액(하도급대금의 2배)에 곱하여 산정한다.
- 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2. 세부산정기준

가. 과징금부과를 위한 세부평가기준

(1)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

위반행위의 유형(A)	적용법조	부과점수
1.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때	법 제19조100	
2. 법 제20조를 위반한 때 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한 때 나. 법 제11조제3항, 법 제13조제7항,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또는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음할인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탈법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법 제20조	100
3. 서면의 교부·보존의무를 위반한 때	법제3조80	
4.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한 때	법 제4조	
5.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때	법 제11조	80
6.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때	법 제13조의2	
7.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등을 구매·사용하도록 강요한 때	법 제5조	
8.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인수를 거부한 때	법 제8조	60

위반행위의 유형(A)	적용법조	부과점수
9.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을 반품한 때	법 제10조	60
10.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때	법 제12조의2	
11.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한 때	법 제17조	
12.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한 때	법 제18조	
13.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적법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법 제6조	40
14.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지 아니한 때	법 제7조	
15.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	법 제9조	
16. 물품대금 등을 부당결제하게 한 때	법 제12조	
17. 법 제13조를 위반한 때 가.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다.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때 라.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한 때 마.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바.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법 제 13조	
18. 법 제14조를 위반한 때 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4조 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성부분의 확인 등의 조치를 원사업자가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4조	
19. 법 제15조를 위반한 때 가. 관세 등을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한 때 나. 관세 등을 그 정하여진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조	
20. 법 제16조를 위반한 때 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증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한 때 나.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6조	

(2)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수 및 과거의 위반전력별 부과점수

구분			부과점수
위반금액의 비율(B)	위반행위의 수(C)	과거의 위반전력(D)	
20% 초과	4개 이상	과거 1년 간 : 5점 초과 과거 3년 간 : 8점 초과	100
10% 초과 20%까지	3개	과거 1년 간 : 4점 초과 5점까지 과거 3년 간 : 7점 초과 8점까지	80
5% 초과 10%까지	2개	과거 1년간 : 3점 초과 4점까지 과거 3년 간 : 6점 초과 7점까지	60
5%까지	1개	과거 1년 간 : 3점까지 과거 3년 간 : 6점까지	40

(3) 비교

- (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의 유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는 상위유형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금액의 비율은 당해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법 위반관련 미지급금액(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까지, 직권조사의 경우는 직권 조사계획 발표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의 비율로 한다.
- (다) 과거의 위반전력 1년 간 또는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기준, 직권조사의 경우는 직권조사 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 기준) 해당 업체가 받은 별표 3 제2호 가.목1)부터 6)까지에 따른 시정 조치 유형별 점수를 합산하고 과거 1년 간 또는 3년 간의 점수가 2가지 유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위유형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직권조사에 의하여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금액의 비율, 과거의 위반전력 등을 감안하여 정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가.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점수 계산방법

$$\text{점수합계(T)} = \text{위반행위의 유형의 부과점수(A)} \times 0.4 + \text{위반금액의 비율의 부과점수(B)} \times 0.2 + \text{위반행위의 수의 부과점수(C)} \times 0.2 + \text{과거의 위반전력의 부과점수(D)} \times 0.2$$

다. 과징금 부과금액의 산정

- (1) 나.에 의하여 계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한다.
- (2)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별표 3] <신설 2008.9.23>

별점의 부과기준(제14조의4 관련)

1. 용어의 정의

- 가. "별점"이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에 따른 별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 나.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별점에서 제3호에 따른 별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 다. "누산점수"란 직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직권조사의 경우에는 직권조사계획을 발표할 날 또는 조사공문을 발송한 날 중 뒤의 날부터 역산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별점을 더한 점수에서, 직전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2. 별점의 부과기준

가. 별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 3) 시정권고: 1.0점
- 4) 시정명령: 2.0점
- 5) 과징금: 2.5점
- 6) 고발: 3.0점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 2)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 3) 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6조,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4)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관련 위반: 법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 5) 그 밖의 위반: 법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3. 별점의 경감기준

가. 유형별 별점의 경감 점수는 다음과 같다.

- 1)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수급 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점
- 2) 「민법」 제32조에 따른 한국공정경제쟁연협회, 「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 가) 업체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1점
 - 나)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경우: 0.5점
- 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을 받은 경우: 3점
- 4) 현금결제 우수업체
 - 가) 100%: 1점
 - 나) 90% 이상 100% 미만: 0.5점
- 5) 전자입찰 우수업체
 - 가) 80% 이상: 1점
 - 나) 60% 이상 80% 미만: 0.5점
- 6)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사용: 가이드라인 1개마다 2점

나. 누산점수를 계산할 때 가목의 각각의 항목마다 1회만 별점을 경감할 수 있다.